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4.

발의자 : 김성희 · 정준호 · 윤준병
김남근 · 박선원 · 조승래
정일영 · 진선미 · 권향엽
이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.

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,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,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

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(안 제13조제5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제3호 본문 중 “면적과 가액”을 “가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